

- 이 추록은 『2024 세법워크북』 제18판 1쇄 및 2쇄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.
- 이 추록은 세법 기본통칙 개정사항 및 그 밖의 수정·보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

1. 비지정기부금 소득처분 개정사항 (법기통 67-106...6)

(1) 개정내용

종전	개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① 출자자(출자임원 제외) : 배당 ② 사용인(임원 포함) : 상여 ③ 위 이외의 경우 : 기타사외유출	<input type="checkbox"/>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① 주주(임직원인 주주 제외) : 배당 ② 임직원 : 상여 ③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: 기타사외유출 ④ 위 이외의 자 : 기타소득

(2) 교재 수정사항

◆ p.법인-125 하 1행~3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.

- ① 주주(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는 제외) : 배당
- ② 직원(임원 포함) : 상여
- ③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: 기타사외유출 **개정**
- ④ 위 외의 경우 : 기타소득 **개정**

◆ 기타 수정사항

면	행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법인-29	상 17	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	기타사외유출·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
법인-126	상 8	귀속자가 동창회인 경우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한다.	귀속자가 동창회인 경우 기타사외 유출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.
	상 13	대표이사 동창회 기부금으로	대표이사 동창회(법인) 기부금으로

2. 개인사업자 폐업 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등 이월액의 필요경비 산입 개정사항 (소칙 42조 7항)

◆ p.소득-73 하단 여백에 다음의 내용으로 추가하세요.

참고 사항 개인사업자 폐업 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등 이월액의 필요경비 산입

감가상각비(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) 한도초과액 이월액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이월액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. **개정**

3. 그 밖의 수정 및 보완사항

(1)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내용 반영

◆ p.법인-297 표 안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.

① + ② **개정**

① 기본공제 금액 :

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× 1%(중견기업 5%, 중소기업 10%)

-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3%(중견기업 6%, 중소기업 12%)
-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5%(중소기업 25%)

② 추가공제 금액 :

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× 3%(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4%)

- 단,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함

(2)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 반영

◆ p.부가-94 하 1행~2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.

*1 재화·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**사업자**이다(따라서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). 재화·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. (대법원 2018도14148)

(3) 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에 대한 내용 반영

◆ p.부가-120 상 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세요.

→ 공급가액에 포함×

사업자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,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·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**않음** (부가통 29-61...4)

(4) 그 밖의 수정사항

면	행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소득-162	상 7	⑬ 「가상자산 ... 대가(2024.7.19.부터 시행) <small>개정</small>	〈삭제〉
	상 9	⑭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<u>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·매수·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</u> <small>개정</small>	⑭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의 <u>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</u> <small>개정</small>
부가-129	하 11	⑧ <u>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</u> 의	⑧ <u>벤처투자회사</u> 의
부가-210	상 11	〈재고납부세액 내용 중〉 매입세액×5.5%* ₂	매입세액×5.5%
	상 14	〈재고매입세액 내용 중〉 매입세액×5.5%	매입세액×5.5%* ₂